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신규조문대비표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 2016. 3. 1. 개정 판 (시행 2016. 3.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80/compare?from=453&to=454>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8:17:20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 & 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 & 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IF 1.0이상)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개정 2016-03-01>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현행	개정안
응모가능.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논문) 추가인센티브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적용하되, 기간은 학년도 기준으로 한다. (대학정보공시 기준 적용)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선택 분야 기본율 추가 인센티브 교육 중심 100% 200% 이상 달성 시, 200만원 지급 연구 중심 200% 300% 이상 달성 시, 200만원 지급 매 학년도(3.1~익년 2.28)마다 교수 개인별 연구실적을 집계하여, ① 선택한 해당 분야 기본율보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할 경우에만 추가인센티브(200만원)를 년1회에 한하여 지급함 ② 기본율 초과할 경우에만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기본율 포함)를 지급함. ③ 기본율 충족 시 각종 연구지원비(학회 연회비,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대회 논문발표비,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영어 논문 교정비 등) 등을 지급함. (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기본율 및 논문 추가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 SCI 논문의 경우 IF 1.0미만이면 SCIE급 연구비 지원(개정 2016-03-01)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연구비 (논문) <개정 2016-03-01> <논문> , (70만원) 등재후보 이상 (100만원) 등재 (200만원) Scopus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개정 2016-03-01> <논문> 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CI/SCIE (IF1.0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게재학술지 계열 구분 기준으로 지급함(복합학의 경우

현행	개정안
0.7 <u>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u> <u>전문학술지</u> <u>추가연구비</u> (논문) (연구 <u>활동비로</u> <u>지원)</u> <u>국제일반,</u> <u>등재후보</u> <u>이상</u> (70만원) <u>등재</u> (150만원) SSCI, A&HCI (450만원) 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CI/SCIE (IF1.0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 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계열 구분없이 동일함.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공동: $1/(n+2)$ (단,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은 2인까지만 n에서 제외) (시행일: 2014.3.1.부-발행일 기준)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 (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 $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u>OECD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u>	<u>소속학과 기준). <개정 2016-03-01></u>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 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논문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은 n 적용후 2인까지만 n에서 감함(단, 소속이 복수 또는 타기관으로 명시된 경우 불인정) <개정 2016-03-01>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 (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 $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개정 2016-03-0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 <개정 2016-03-01> 전문학술지 연구비 (논문) <u>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u>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3-01>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u>논문지</u> <u>가중치</u> <u>비고</u>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u>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개정 2016-03-01></u> 저·역서 연구비 <개정 2016-03-01>

현행	개정안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저역서, 편서) (연구 활동비로 지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저·역서 (250만원), 편서 (150만원)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편서(150만원)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 149 20% 10% 150 199 40% 20% 200 249 60% 30% 250 299 70% 35% 300 349 80% 40% 350 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저·역서 (2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2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250만원) <개정 2016-03-01>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개정 2016-03-01>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 149 20% 10% 150 199 40% 20% 200 249 60% 30% 250 299 70% 35% 300 349 80% 40% 350 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현행	개정안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편서 포함):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지도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중복지원 가능 <개정 2015-02-26>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판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개정 2016-03-01> 연구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개정 2016-03-01>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 (본교 소속 표기시 졸업생 가능)<개정 2016-03-01>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중복지원(단, 포스터 발표시 2편부터는 50%적용) <개정 2015-02-26><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6-03-01>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판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 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삭제〉 <개정 2016-03-01> 교

현행	개정안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 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u>.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u>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u>.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u> 참가비지원 (국외)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u>.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u>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 (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5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u>.〈삭제〉〈개정 2016-03-01〉</u>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u>.〈삭제〉〈개정 2016-03-01〉</u>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 (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5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u>.〈삭제〉〈개정 2016-03-01〉</u> 과제신청 준비금 .I등급(정부급, 40만원), II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 III등급(민간, 20만원) <u>.〈삭제〉〈개정 2016-03-01〉</u>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현행	개정안
.기본율 충족 시 지급함.(단, 2015학년도에는 2014학년도 기본율의 50% 충족 시 지급함.) (시행일: 2014.3.1.부) 과제신청 준비금 .I등급(정부급, 40만원), II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 III등급(민간, 20만원) 과제 신청 준비금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소를 통할 것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학 분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 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분 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 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현행	개정안
200%/년 이내로 지원함.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국내전문급(후보급)
(등재급)	300
500	만원
만원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급
국내전문급(후보급)	연구비
300	<u>〈개정 2016-03-01〉</u>
만원	국제전문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450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만원
작곡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전문학술지	작곡
<u>추가연구비</u>	국내저명
<u>(연구활동비로</u>	(등재급)
<u>지원)</u>	150
국제전문	만원
450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만원	국내저명 연주홀 협연, 발표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작곡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국제일반
작곡	70
국내저명	만원
(등재급)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150	국제전문 연주홀 협연, 발표
만원	작곡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국내전문
국내저명 연주홀 협연, 발표	(후보급)
작곡	70
국제일반	만원
70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만원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작곡
국제전문 연주홀 협연, 발표	체
	육
	분
	<u>야</u>
	교내공모과제

현행	개정안
작곡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학 분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 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2. 지도인 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 제출함.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 (연구활동비로 지원)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 미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 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2. 지도인 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 제출함.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급 연구 (개정 2016-03-01)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 미

현행	개정안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 <u>예</u> 술 디 자 인 학 분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술 디 자 인 분 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급 연구 <u><개정 2016-03-01></u>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현행	개정안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 <u>추가연구비</u> <u>(연구활동비로</u> <u>지원)</u>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삭제> <개정 2016-03-01> ⑦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서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지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삭제> <개정 2016-03-01> ⑦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서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현행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㉔교내논문 심사료 지원 1. 교내논문 심사평가를 위한 위원 위촉은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은 교내 또는 교외 교수 2인 이상으로 하기로 하며, 논문심사료는 각 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급 한다. 2. 논문 심사료는 편당 3만원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㉕저서부문(역서, 편서포함)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서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개의 결과물에 대해 120% 이내 지원. (삭제)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단, 우리 학교 교원이 저술에 처음 참여하였을 경우 개정판이라도 초판으로 본다.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제8조(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 ㉑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㉒ 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	제8조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 5조 ①항을 기준으로 한다.) 4. 학술대회 자료집의 논문(학술대회의 Proceeding 논문)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지원) 다음 조항에 속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정규학술 Journal이 아닌 학술단체 및 기관의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 2. 학술단체 및 기관에 실린 에세이 형식의 Article 3.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논문이나 저서(기타 교내학술연구비세칙 제 5조 ①항을 기준으로 한다.) 4. SCOPUS의 문서 유형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SCI급/SCOPUS학술지에서 제외(국내학술지 동일적용){개정 2016-03-01}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A & HCI,

SSCI

(1000만원)

학진등재

(500만원)

학진후보

(300만원)

SCI

(IF 1.0이상)

(1000만원)

SCIE /Scopus

(600만원)

학진등재

(300만원)

논문게

재시는 인문사회

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②항에 따름

1인 1과제 (시행일 : 2013년 공모과제부터 적용)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결과물 미제출 시 근거서류(수정확인자료,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회 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

.간접비 5% 징수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SCIE논문의 경우 IF 1.0이상이면 SCI급 연구비 지원 / SCI논문의 경우 IF 1.0미만이면 SCIE급 연구비 지원

.게재료와 외부 실험기기 사용료 별도 지원

전문학술지

연구비

(논문)

<논문>

,

(70만원)

등재후보

이상

(100만원)

등재

(200만원)

Scopus

(300만원)

SSCI,

A&HCI

(450만원)

<논문>

국제일반,

등재후보이상

(70만원)

등재

(150만원)

SCI/SCIE

(IF1.0미만)

Scopus

(300만원)

SCI/SCIE

(IF1.0이상)

(450만원)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논문 지원 기준>

.무제한지원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게재학술지 계열 구분 기준으로 지급함(복합학의 경우 소속학과 기준).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공동: $1/(n+2)$

.논문 수행 당시 본교 학생은 n 적용후 2인까지만 n에서 감함(단, 소속이 복수 또는 타기관으로 명시된 경우 불인정)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 (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는 $1/n+2$)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SCI, SCIE 논문 중 IF 3.0이상이면서 본교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1인에 한하여) 저자수가 4인 이상 다수라 할지라도 n=4로 인정함(SSCI, A&HCI 동일적용)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

국제일반 논문지원 기준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되어야 함. (시행일: 2013.3.1.부 - 발행일 기준)

전문학술지

연구비

(논문)

추가인센티브

. 100%의 기준은 국내 등재(후보 포함)지 단독 1편의 경우이며, 기타 논문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음.

논문지

가중치

비고

SSCI, A&HCI, SCI/SCIE(IF 1.0 이상)

2.0

SCI/SCIE (IF 1.0 미만), SCOPUS

1.5

등재(후보 포함)

1.0

등재(후보 포함) 단독 1편 기준

국제 일반

0.7

4개국 이상 주저자(제1저자, 교신)이어야 하며, 7편 이상 논문이 게재시 인정

저·역서

연구비

저·역서

(250만원)

저·역서

(250만원)

저·역서

(250만원)

. 지원금액 : 저·역서(250만원)

분량(page)

저·역서

실험실습서

100_冊 149

20%

10%

150_冊 199

40%

20%

200_冊 249

60%

30%

250_冊 299

70%

35%

300_冊 349

80%

40%

350 399

90%

45%

400 이상

100%

50%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3.3.1.부- 발행일 기준)

책자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한다.(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책 사이즈

지급비율

A5(148×210) 미만

50%

A5(148×210)이상 B5(182×257)미만

70%

B5(182×257)이상

100%

지원횟수: 저·역서(편서 포함) 200% 제한지원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저·역서 연구비 지원 없음(시행일: 2012.9.1.부 - 발행일 기준)

저·역서: 1/n (시행일: 2012.9.1.부- 발행일 기준)

연구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또는교신) 3000 만원, 공동저자 500만원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500만원, 공동 200만원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등급 발생시 별도심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SCI급 : 학년도 기준 5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50만원, 10편째 논문 부터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A&HCI, SSCI : 학년도기준 2편째 논문부터 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인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4.3.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20만원), 국외(30만원)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 (본교 소속 표기시 졸업생 가능)

.동일학술대회(시간장소동일) 중복지원(단, 포스터 발표시 2편부터는 50%적용)

.

외부실험

기기

사용료지원

100만원이내

.연초계획서 제출 시 결의에 한하며, 전문학술지 등재 이상일 경우 (본 교 미구비기기)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지원

.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예능계(미술) 출품비의 경우 게재료 형식으로 지원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일 경우

.횟수 제한 없음

.게재시 심사료 지원

논문1편당 국제(SCI급: SCIE, SCOPUS 포함) 최대 120만원,

논문1편당 국내(국제일반 포함) 최대 60만원(시행일 : 2013.3.1.부 - 발행일 기준)

.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

참가비지원

.공식적인 학술활동비(학(협)회, 워크샵, 세미나)발생 영수실비

.1인당 년 60만원 제한 (연회비, 참가비 합계)

.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2회 제한)

.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

(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150만원 까지 지원(공모심사 후/ 3월, 7월)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세미나,

심포지엄 혹

은 학술대회

80만원 까지 지원 (시행일: 2013.9.1.부)

등재지급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규모급(공모심사) 학회(협회), 단체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

과제신청

준비금

.I등급(정부급, 40만원), II등급(지방자치단체급, 30만원),

III등급(민간, 20만원)

.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

악

분

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추가연구비지원은 프로그램 건수로 1/n 한다.

2.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 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경우 개인단독공연

연지원을 원칙으로하며,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 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 며, 연구공연이 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모과제와 추가연구비를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저명급

(등재급)

500

만원

연주(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전문학술지급

연구비

국제전문

4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저명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저명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제일반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제전문 연주홀 협연,발표

작곡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국내전문 연주홀 협연 또는 발표

작곡

체

육

분

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무용

해외 저명단체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

1.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 2.지도인경우 전공공인단체 전공졸업자단체 대상 이어야함.
3.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총200%/년 이내로 지원함.
5.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결정하여 제출함.

국내저명급(등재급)

5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이상)에서의 개인발표

국내전문급(후보급)

300

만원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전문무용공연장소(300석미만)에서의 개인발표

전문학술지급

연구

국제전문

450

만원

무용

국제저명 공연장 발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공연장 발표

국제일반

70

만원

국제전문 공연장 발표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공연장 발표

미

술

디

자

인

분

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 2.추가연구비지원은 1/n(참가자 n)로 한다.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200%/년 이내로 지원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전문학술지급

연구

국제전문

450

만원

디자인,회화,공예,멀티미디어,영상등

해외저명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

(공인된 국제저명미술단체 및 학회주최)

국내저명

(등재급)

150

만원

국내저명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치만 저명급은 포함)

국제일반

70

만원

해외전문 갤러리 그룹전 또는 개인전(국제전문 미술단체 주최 및 공인된 국내 미술단체 및 학회주최그룹전, 지방이치만 저명급은 포함)

국내전문

(후보급)

70

만원

국내전문 갤러리의 그룹전 또는 개인전(광역시, 도급 미술단체 주최 그룹전, 공인갤러리, 화랑, 미술관)

국내일반

(실적만인정)

0

만원

지방미술 단체 및 학회 주최 그룹전 및 개인전, 동문전 등의 전문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연구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에 의한 연구비 지급은 200%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연구 교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①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⑦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서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이며 머리말, 각주, 참고문헌 등 교재수준을 갖춘 것이며 교양도서는 안됨)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판권지가 있어야 하며 저자소속이 명확히 있어야 함.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11. 저서기본요건(100페이지이상, 발행부수 500부 이상, 학술저서형식)을 충족해야함.

12. 저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각 장(chapter)별 해당저자 기록되거나 출판사의 저자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중 "학술대회 자료집의 논문(학술대회의 Proceeding 논문)"을 "SCOPUS의 문서 유형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SCI급/SCOPUS학술지에서 제외(국내학술지 동일 적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